자동이체(송금) 약관

제 1조 (약관의 적용)

계좌간 자동이체 또는 타행 자동이체에 의하여 각종 자금을 정기적으로 이체하고자 하는 자(이하 "고객"이라 합니다)와 토스뱅크 주식회사(이하 "토스뱅크"라 합니다)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.

제 2 조 (용어의 정의)

- ① "다른 금융기관"이란 이체 자금을 받는 자(이하 "수취인"이라 합니다)가 거래하는 금융기관 중 토스뱅크가 아닌 금융기관을 말합니다.
- ② "자동이체"란 토스뱅크가 고객의 신청에 따라 지정된 날에 지급청구서 제출 등 별도 청구 없이 출금계좌에서 이체금액을 인출하여 지정된 입금계좌로 이체(송 금)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③ "계좌간 자동이체"란 출금계좌와 입금계좌가 모두 토스뱅크 계좌인 자동이체를 말합니다.
- ④ "다른 금융기관 자동이체"란 출금계좌는 토스뱅크 계좌이고 입금계좌는 다른 금융기관 계좌인 자동이체를 말합니다.
- ⑤ "자동이체 지정일"이란 자동이체 신규 등록 또는 변경 시에 고객이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.
- ⑥ "자동이체 출금일"이란 자동이체 출금계좌에서 실제 출금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.

제 3 조 (자동이체 신청)

- ① 고객이 자동이체를 신규 등록,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스뱅크에 개설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를 출금계좌로 하여 자동이체(신규 등록, 변경. 해지)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- ② 계좌간 자동이체 또는 다른 금융기관 자동이체를 신규로 등록하거나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동이체 출금일의 전일까지 모바일앱(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전자적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'토스앱'을 말합니다. 이하 같습니다)에서 제 1 항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- ③ 제 1 항의 해지 신청을 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거래지시의 철회로 봅니다.
- ④ 고객이나 입•출금계좌의 상태, 입•출금계좌의 상품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이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제 4 조 (자동이체 주기)

- ①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주기를 일, 주, 월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
- ② 자동이체 지정일은 날짜, 요일 등 토스뱅크가 정한 형식으로 지정합니다. 단, 자동이체 주기가 일단위인 경우에는 별도로 지정하지 않습니다.
- ③ 자동이체 주기가 월단위인 경우로서 자동이체 지정일이 없는 월의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이 자동이체 지정일이 됩니다.

제 5 조 (입금가능 예금종목)

- ① 계좌간 자동이체의 입금계좌는 보통예금, 정기적금, 대출계좌 등입니다.
- ② 다른 금융기관 자동이체의 입금계좌는 당좌, 가계당좌, 보통, 저축, 자유저축, 기업자유예금과 입금은행이 지정하는 적금 및 신탁계정이어야 하며, 이 외의 계 좌로 이체를 원할 경우 고객은 입금 가능한 계좌와 연계하여 이체할 수 있도록 다른 금융기관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

제 6 조 (출금)

- ① 토스뱅크는 자동이체 출금일에 고객의 출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지정된 입금계좌로 입금합니다.
- ② 계좌간 자동이체, 다른 금융기관 자동이체는 고객이 지정한 자동이체 주기와 자동이체 지정일로 결정되는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도 이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③ 출금계좌의 출금가능 예금잔액에는 마이너스 통장방식의 한도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자동이체 출금일 현재의 대출 가능금액이 포함되고, 아직 결제되지 않은 다른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입금액이나 지급정지금액 등은 제외됩니다.
- ④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, 특정 채무 등의 이체대상만을 지정하고, 자동이체 지정일 또는 금액을 지정하지 않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토스뱅크는 고객이 지정한 대상 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체 처리합니다.
- ⑤ 천재지변,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 1 항에서 정한 출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- ⑥ 출금계좌에서 같은 날 여러 건을 출금하여야 할 경우 출금 우선순위는 토스뱅크에서 정한 <별표 1> 자동이체 출금우선순위에 따릅니다.

제 7 조 (거래불능 및 면책)

- ① 자동이체 출금일에 출금계좌의 출금가능 예금잔액이 이체 금액과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에 미달하면 이체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② 입금계좌 부재(계좌번호 오류기재 포함), 잔액증명서 발급, 입금한도 초과, 법적제한, 해지 등 고객의 귀책사유로 출금 또는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체 처리하지 않으며, 출금 처리 후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해당일에 출금계좌로 입금시킵니다.
- ③ 제 1 항과 제 2 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고객의 귀책사유로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은 경우,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토스뱅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토스뱅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 8 조 (수수료)

계좌간 자동이체, 다른 금융기관 자동이체 이용수수료는 없습니다.

제 9 조 (계좌이동서비스)

- ① 계좌간 자동이체와 다른 금융기관 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이며, 「계좌이동서비스 이용약관」을 준용합니다.
- ② 토스뱅크는 금융결제원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에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의 조회 및 해지, 출금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.
- ③ 고객은 모바일앱, 금융결제원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(www.payinfo.or.kr)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계좌이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④ 고객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토스뱅크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, 다른 금융기관의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던 기존의 자동이체는 해지 처리되고 토스뱅크 출금 계좌에 자동이체가 신규 등록됩니다.

제 10 조 (다른 약관과의 관계)

- ① 계좌간 자동이체와 다른 금융기관 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「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」 및 「토스뱅크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약관」이 적용되며,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.
- ② 계좌간 자동이체 중 토스뱅크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(대출 자동이체)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개별 대출거래약정서에서 정하는 규정이 적용되며,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개별 대출거래약정서에서 정하는 규정이 우선합니다.
- ③ 이 약관과「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」,「토스뱅크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약관」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예금거래기본약관」,「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」, 관련 예금약관을 준용합니다.

제 11 조 (약관의 변경)

토스뱅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」의 '약관의 변경'조항을 준용합니다.

부칙 (2021.7.27)

제 1 조 시행일

이 약관은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.

부칙 (2022.4.18)

제 1 조 시행일

이 약관은 2022 년 4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. (이 특약의 개정된 내용은 기존 가입고객도 적용됩니다.)

부칙(2023.4.20)

제 1 조 시행일

이 약관은 202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. (이 특약의 개정된 내용은 기존 가입고객도 적용됩니다.)

〈별표 1〉 자동이체 출금우선순위

- 1. 토스뱅크 대출원리금 이체 (대출 자동이체)
- 2. 다른 금융기관 자동이체 출금
- 3. 계좌간 자동이체 출금
- 4. 관리비 자동이체 출금
- 5. 토스뱅크 카드대금 출금
- 6. 지로/CMS/펌뱅킹 자동이체 출금
- 7. 기타 자동이체 업무

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, 13층 | 고객센터 1661-7654 | 사업자번호 462-86-01671

